

# 다이닝인

|              |            |                 |                     |
|--------------|------------|-----------------|---------------------|
|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 20214888   | 가맹본부<br>홈페이지 주소 | -                   |
|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 2021-11-15 | 대표<br>이메일 주소    | shinhanbn@gmail.com |
|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 2024-06-24 |                 |                     |

## 다이닝인 정보공개서

신한비즈넷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신한비즈넷

###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는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 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가맹본부의 주된<br>사무소의 소재지 | 경기도 광주시 새오개길 6-75, B동<br>202호(목현동, 크로바빌라) | 가맹본부의<br>대표 팩스번호    | -            |
| 가맹본부의<br>대표 전화번호     | 031-797-2035                              | 가맹사업 담당부서<br>및 전화번호 | 031-797-2035 |

---

# 목 차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 (<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 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할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될 경우 변경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호    | 영업표지      |             | 주 소                                    |              |              |
|-------|-----------|-------------|----------------------------------------|--------------|--------------|
| 신한비즈넷 | 다이닝인 외 7개 |             | 경기도 광주시 새오개길 6-75, B동 202호(목현동, 크로바빌라) |              |              |
|       | 법인설립등기일   | 사업자등록일      | 대표자                                    | 대표전화번호       | 대표팩스번호       |
|       | "개인사업자"   | 2021.10.05. | 유정재                                    | 031-797-2035 | -            |
|       | 법인등록번호    | -           | 사업자등록번호                                |              | 160-36-00960 |

###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바로 전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을 인수·합병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있습니다.

| 인수·합병 여부                  | 기업명         | 영업표지 | 인수·합병일      | 주 소                                           | 대표자 |
|---------------------------|-------------|------|-------------|-----------------------------------------------|-----|
|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을 인수함          | 해당없음        |      |             |                                               |     |
|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의 가맹사업 일부를 인수함 | 해당없음        |      |             |                                               |     |
| 다른 기업에 가맹사업 일부를 인도함       | (주)에이치앤에스그룹 | 비알레티 | 2023.07.05. | 경기도 화성시 동탄기흥로 557, 11층 1108호(영천동, 금강펜테리움IT타워) | 오용석 |
| 다른 기업이 가맹본부를 합병함          | 해당없음        |      |             |                                               |     |

###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 구 분       | 내 용           |
|-----------|---------------|
| 명 칭       | 다이닝인          |
| 상 호       | 다이닝인 OO(지역명)점 |
| 상표(서비스표)  | 다이닝인          |
| 광 고       | -             |
| 그 밖의 영업표지 | -             |

##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별첨 1]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 연도    |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매출액 | 영업이익 | 당기순이익 |
|-------|------|------|------|-----|------|-------|
| 2021년 | -    | -    | -    | 0   | -    | -     |
| 2022년 | -    | -    | -    | 0   | -    | -     |
| 2023년 | -    | -    | -    | 0   | -    | -     |

당사는 개인사업자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아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으로 이를 대신합니다.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없습니다.

##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련여부          | 이름  | 현 직위 | 사업경력          |          |       |
|---------------|-----|------|---------------|----------|-------|
|               |     |      | 기간            | 직위       | 담당 업무 |
| 가맹사업<br>관련 임원 | 유정재 | 대표   | 2021.10. ~ 현재 | 신한비즈넷 대표 | 총괄    |

##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시점            | 임원수(명) |     | 직원수(명) |
|---------------|--------|-----|--------|
|               | 상근     | 비상근 |        |
| 2023년 12월 31일 | 1      | -   | -      |

##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습니다.

| 관계   | 상호/이름 | 구분      | 기간        | 사업내용                                        |
|------|-------|---------|-----------|---------------------------------------------|
| 가맹본부 | 신한비즈넷 | 가맹사업 경영 | 가맹사업 개시 전 | 미식감동(등록번호: 20215040)이라는 영업표지의 한식사업 경영       |
|      |       | 가맹사업 경영 | 가맹사업 개시 전 | 뚝딱(등록번호: 20214883)이라는 영업표지의 한식사업 경영         |
|      |       | 가맹사업 경영 | 가맹사업 개시 전 | 북일관(등록번호: 20215042)이라는 영업표지의 한식사업 경영        |
|      |       | 가맹사업 경영 | 가맹사업 개시 전 | 젠스키야키(등록번호: 20215043)이라는 영업표지의 일식사업 경영      |
|      |       | 가맹사업 경영 | 가맹사업 개시 전 | 피치브라더스(등록번호: 20215044)이라는 영업표지의 피자사업 경영     |
|      |       | 가맹사업 경영 | 가맹사업 개시 전 | 잔(ZYAN)(등록번호: 20214887)이라는 영업표지의 기타 외식사업 경영 |
|      |       | 가맹사업 경영 | 가맹사업 개시 전 | 다이닝인(등록번호: 20214888)이라는 영업표지의 기타 외식사업 경영    |
|      |       | 가맹사업 경영 | 가맹사업 개시 전 | 밀트리(등록번호: 20215039)이라는 영업표지의 기타 도소매사업 경영    |

##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없습니다.

## **Ⅱ. 가맹본부의 다이닝인 가맹사업 현황**

1. 다이닝인을 시작한 날 : 가맹계약 체결사실이 없습니다.

### **2. 다이닝인 연혁**

| 가맹본부 상호 | 영업표지 | 대표자 | 가맹사업 경영 기간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
| 신한비즈넷   | 다이닝인 | 유정재 | 가맹사업 개시 전  | 경기도 광주시 새오개길 6-75, B동 202호(목현동, 크로바빌라) |

### **3. 다이닝인 업종**

| 영업표지 | 업종    |           |
|------|-------|-----------|
| 다이닝인 | 대분류   | 소분류(주요상품) |
|      | 기타 외식 | 퓨전요리      |

###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다이닝인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 지역 | 2021.12.31. |      |      | 2022.12.31. |      |      | 2023.12.31. |      |      |
|----|-------------|------|------|-------------|------|------|-------------|------|------|
|    | 전체          | 가맹점수 | 직영점수 | 전체          | 가맹점수 | 직영점수 | 전체          | 가맹점수 | 직영점수 |
| 전체 | -           | -    | -    | -           | -    | -    | -           | -    | -    |
| 서울 | -           | -    | -    | -           | -    | -    | -           | -    | -    |
| 부산 | -           | -    | -    | -           | -    | -    | -           | -    | -    |
| 대구 | -           | -    | -    | -           | -    | -    | -           | -    | -    |
| 인천 | -           | -    | -    | -           | -    | -    | -           | -    | -    |
| 광주 | -           | -    | -    | -           | -    | -    | -           | -    | -    |
| 대전 | -           | -    | -    | -           | -    | -    | -           | -    | -    |
| 울산 | -           | -    | -    | -           | -    | -    | -           | -    | -    |
| 세종 | -           | -    | -    | -           | -    | -    | -           | -    | -    |
| 경기 | -           | -    | -    | -           | -    | -    | -           | -    | -    |
| 강원 | -           | -    | -    | -           | -    | -    | -           | -    | -    |
| 충북 | -           | -    | -    | -           | -    | -    | -           | -    | -    |
| 충남 | -           | -    | -    | -           | -    | -    | -           | -    | -    |
| 전북 | -           | -    | -    | -           | -    | -    | -           | -    | -    |
| 전남 | -           | -    | -    | -           | -    | -    | -           | -    | -    |
| 경북 | -           | -    | -    | -           | -    | -    | -           | -    | -    |
| 경남 | -           | -    | -    | -           | -    | -    | -           | -    | -    |
| 제주 | -           | -    | -    | -           | -    | -    | -           | -    | -    |

## 5. 바로 전 3년간 다이닝인 가맹점 수

(단위: 개)

| 연도   | 연초 | 신규 개점 | 계약 종료 | 계약 해지 | 명의 변경 | 연말 |
|------|----|-------|-------|-------|-------|----|
| 2021 | -  | -     | -     | -     | -     | -  |
| 2022 | -  | -     | -     | -     | -     | -  |
| 2023 | -  | -     | -     | -     | -     | -  |

## 6. 다이닝인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는 다이닝인 외에도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고 있는 가맹사업의 바로 전 3년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개)

| 구분   | 상호/이름 | 영업표지    | 정보공개서<br>등록번호 | 업종     | 가맹점/직영점의 수      |                 |                 |
|------|-------|---------|---------------|--------|-----------------|-----------------|-----------------|
|      |       |         |               |        | 2021.<br>12.31. | 2022.<br>12.31. | 2023.<br>12.31. |
| 가맹본부 | 신한비즈넷 | 미식감동    | 20215040      | 한식     | -/-             | -/-             | -/-             |
|      |       | 똑딱      | 20214883      | 한식     | -/-             | -/-             | -/-             |
|      |       | 북일관     | 20215042      | 한식     | -/-             | -/-             | -/-             |
|      |       | 젠스키야키   | 20215043      | 일식     | -/-             | -/-             | -/-             |
|      |       | 피치브라더스  | 20215044      | 피자     | -/-             | -/-             | -/-             |
|      |       | 잔(ZYAN) | 20214887      | 기타 외식  | -/-             | -/-             | -/-             |
|      |       | 다이닝인    | 20214888      | 기타 외식  | -/-             | -/-             | -/-             |
|      |       | 밀트리     | 20215039      | 기타 도소매 | -/-             | -/-             | -/-             |

##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없습니다.

다이닝인 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2023년에 올린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다 정확한 금액은 매출액 표의 상한과 하한 금액 사이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 지역 | 2023년 말<br>가맹점 수 | 2023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             |                  |             |                  |             | 비고 |
|----|------------------|-------------------------|-------------|------------------|-------------|------------------|-------------|----|
|    |                  | 연간 평균 매출액               |             | 연간 평균<br>매출액(상한) |             | 연간 평균<br>매출액(하한) |             |    |
|    |                  | 연간 평균<br>매출액            | 면적<br>3.3㎡당 | 상한               | 면적<br>3.3㎡당 | 하한               | 면적<br>3.3㎡당 |    |
| 전체 | -                |                         |             |                  |             |                  |             |    |
| 서울 | -                |                         |             |                  |             |                  |             |    |

|    |   |  |  |  |  |  |  |  |
|----|---|--|--|--|--|--|--|--|
| 부산 | - |  |  |  |  |  |  |  |
| 대구 | - |  |  |  |  |  |  |  |
| 인천 | - |  |  |  |  |  |  |  |
| 광주 | - |  |  |  |  |  |  |  |
| 대전 | - |  |  |  |  |  |  |  |
| 울산 | - |  |  |  |  |  |  |  |
| 세종 | - |  |  |  |  |  |  |  |
| 경기 | - |  |  |  |  |  |  |  |
| 강원 | - |  |  |  |  |  |  |  |
| 충북 | - |  |  |  |  |  |  |  |
| 충남 | - |  |  |  |  |  |  |  |
| 전북 | - |  |  |  |  |  |  |  |
| 전남 | - |  |  |  |  |  |  |  |
| 경북 | - |  |  |  |  |  |  |  |
| 경남 | - |  |  |  |  |  |  |  |
| 제주 | - |  |  |  |  |  |  |  |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별로 물품 공급액,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는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당사가 매출액 추정에 사용한 자료는 당사의 본사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당사로 방문하여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 8. 다이닝인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다이닝인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도   | 영업중인 가맹점 수 | 평균 영업기간 |
|------|------------|---------|
| 2023 | -          | -       |

##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다이닝인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지역본부를 운영하지 않으며, 당사에서 모든 가맹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

당사에서 2023년에 다이닝인과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 구분 | 수단 | 기간 | 지출 비용 |      |     | 비고 |
|----|----|----|-------|------|-----|----|
|    |    |    | 합계    | 가맹본부 | 가맹점 |    |
| 합계 |    |    | -     | -    | -   |    |
| 광고 |    |    | -     | -    | -   |    |
| 판촉 |    |    | -     | -    | -   |    |

## 11. 가맹금 예치

당사는 가맹금 예치제도를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서울보증보험과 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

###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다이닝인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지급 대상         | 예치 대상 여부 | 비고    |
|--------|---------------|----------|-------|
| 최초 가맹금 | 가맹본부          | 예치       | 확정 금액 |
| 보증금    | 가맹본부          | 예치       | 확정 금액 |
| 기타 비용  |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 예치하지 않음  | 추정 금액 |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 구분  | 금액    | 지급 기한   | 반환조건                                          | 반환될 수 없는 사유            |
|-----|-------|---------|-----------------------------------------------|------------------------|
| 총계  | 8,800 | -       | -                                             | -                      |
| 가입비 | 5,500 | 계약 체결 시 | 가맹점 개점 이후 반환 안 됨. 단 개점 전 해약 시 위약금과 상계처리 후 반환  | 가맹점 모집을 위해 소요되는 소멸성 비용 |
| 교육비 | 3,300 | 계약 체결 시 | 교육 이후 반환 안 됨. 단 개점 및 교육 전 해약 시 위약금과 상계처리 후 반환 | 교육을 위해 소요되는 소멸성 비용     |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 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없음)

| 구분       | 금액    | 지급 기한   |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 비고                                                         |
|----------|-------|---------|-------------------------------------------------------------------|------------------------------------------------------------|
| 계약이행 보증금 | 2,000 | 계약 체결 시 | 가맹금, 물품대금 미지급, 본사가 공급한 물품 파손, 계약 종료 후 조치(영업표지 철거 등 원상회복의무)의 미이행 등 | 계약 종료일 또는 해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이행보증금으로 잔존 채무손해배상액을 정산하여 잔액을 상환 |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금액(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
|-----------------|--------------------|
| 합계              | 10,800             |
| 가입비             | 5,500              |
| 교육비             | 3,300              |
| 계약이행보증금(부가세 없음) | 2,000              |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 IV-1-7)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기준 33㎡(약 10평))

| 구분                            | 지급대상      | 금액     | 면적<br>3.3㎡당 금액 | 지급 기한                  | 반환조건                                                                |
|-------------------------------|-----------|--------|----------------|------------------------|---------------------------------------------------------------------|
| 총계                            |           | 55,000 | 5,500          |                        |                                                                     |
| 인테리어                          | 협력업체(미지정) | 22,000 | 2,200          | 가맹<br>계약 시<br>개별<br>계약 | 공사 시작 및 설치 후 반환 안<br>됨. 설치 전 공사 및 설치 위해<br>지불한 구입·제작비용 상계처리<br>후 반환 |
| 간판 및<br>사인물                   | 협력업체(미지정) | 5,500  | 550            |                        |                                                                     |
| 설비 및<br>기기                    | 협력업체(미지정) | 22,000 | 2,200          |                        | 제공 후 반환 안 됨. 제공 전<br>제공 위해 지불한 구입·제작비용<br>상계처리 후 반환                 |
| 초도물품<br>· 원부자재                | 협력업체(미지정) | 5,500  | -              |                        |                                                                     |
| 가맹점사업자 직접 시공 및<br>물품 구입 시 검수비 |           |        |                | 3.3㎡ 당 220             |                                                                     |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상기 비용은 설비의 품질, 선택사항, 추가 공사 및 점포 건물에 따른 냉난방기, 철거, 가스설비, 전기승압, 통신설비, 소방시설, 화장실공사, 외부 상하수도공사, 어닝, 외장공사, 인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 표의 금액에서 장비시설 비용은 점포 규모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위 표의 금액 중 인테리어 장비시설을 가맹점사업자가 직접 할 경우 3.3㎡ 당 금 이십이만원(₩220,000)의 금액(부가세 포함)을 감리비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선정 주체  | 선정 기준                                                                                |
|--------|--------------------------------------------------------------------------------------|
| 가맹점사업자 | 가맹상담 → 가맹본부와 협의 후 가맹희망자가 직접 희망영역지역 파악 → 현장 조사 등 시장 분석(입점 가능한 점포 설명 및 추천) → 최적의 입지 도출 |

가맹점사업자는 자신의 책임 하에 점포의 입지를 선정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입지선정에 당사는 해당 행정구역상의 구분, 시장의 특성, 주요한 근린시설, 업종특성에 따른 매출성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점포의 실사를 통하여 가맹희망자에게 조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가 조언한 경우라도 최종 의사결정권은 가맹점사업자에게 있습니다.

####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교육 기준            | 계약·채용 기준                                    |
|--------|------------------|---------------------------------------------|
| 가맹점사업자 |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없을 것 |
| 종업원    | 특별한 기준 없음        | 만18세 이상일 것                                  |

####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다이닝인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8) 귀하가 당사에 납부하는 가맹금은 분납할 수 없으며, 일시불로 납부 하여야 합니다.

## 2. 영업 중의 부담

###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 지급해야 하는 정기 또는 부정기 지급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 구분        | 지급대상 | 금액           | 지급기한  | 반환조건/<br>반환불가 사유     | 비고      |
|-----------|------|--------------|-------|----------------------|---------|
| 로열티       | 가맹본부 | 월 매출액의 3.3%  | 익월 5일 | 후불로 반환 안됨            |         |
| 광고<br>분담금 | 가맹본부 | 당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 개별청구  | 광고활동 실시 후<br>반환되지 않음 | V-8. 참고 |

|                                   |                            |                                                                                                                     |                                                                                                                                                                                                     |                                                                     |                                                              |
|-----------------------------------|----------------------------|---------------------------------------------------------------------------------------------------------------------|-----------------------------------------------------------------------------------------------------------------------------------------------------------------------------------------------------|---------------------------------------------------------------------|--------------------------------------------------------------|
| 판촉<br>분담금                         | 가맹본부                       | 가맹점사업자에게<br>일부 부담<br>공동판촉 시<br>기획비용은 당사부담.<br>판촉물 제작비용은<br>가맹점사업자 부담                                                | 개별청구                                                                                                                                                                                                | 판촉활동 실시 후<br>반환되지 않음                                                |                                                              |
| 개점 이후<br>교육<br>훈련비                | 가맹본부                       | 1인 1일 기준 110                                                                                                        | 개별청구                                                                                                                                                                                                | 실비로 반환<br>안됨                                                        | 수시교육                                                         |
|                                   | 가맹본부                       | 1인 1일 기준 110                                                                                                        | 개별청구                                                                                                                                                                                                | 가맹점사업자가<br>의뢰하여<br>개별적으로 실시될<br>경우 실비로<br>청구되기 때문에<br>반환되지 않음       | 특별교육                                                         |
|                                   | 가맹본부                       | 1인 1일 기준 110                                                                                                        | 개별청구                                                                                                                                                                                                | 교육실시 후<br>반환되지 않음                                                   | 재교육                                                          |
| 간판류<br>임차료                        | 해당없음                       |                                                                                                                     |                                                                                                                                                                                                     |                                                                     |                                                              |
| 영업표지<br>변경 등에<br>따른<br>간판변경<br>비용 | 가맹본부                       | 본부: 변경비용의<br>25%<br>귀하: 변경비용의<br>75%                                                                                | -                                                                                                                                                                                                   | -                                                                   | 경영방침, 유형의<br>변화 등<br>부득이한 경우<br>변경될 수 있음                     |
| 영업지역<br>보장금                       | 해당없음                       |                                                                                                                     |                                                                                                                                                                                                     |                                                                     |                                                              |
| 시설, 각종<br>기기의<br>교체·<br>보수비용      | 가맹본부<br>및<br>협력업체<br>(미지정) |                                                                                                                     |                                                                                                                                                                                                     |                                                                     | 교체·보수 필요시 시<br>설, 기기 등의 내<br>구연수 등을 감안<br>하여 당사와 협의<br>하여 결정 |
| 점포환경개<br>선 비용                     |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br>수반하지 않는<br>점포환경개선: 가맹본부<br>부담 비용비율 20%<br><br>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br>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br>: 가맹본부 부담<br>비용비율40% | 일괄 지급 절차: 가맹점사업자의<br>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br>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br>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br>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br><br>분할 지급 절차: 가맹점사업자의<br>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br>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br>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br>부담액을 분할 지급 | 점포환경 개선을<br>위한 제반작업<br>진행 전/<br>점포환경 개선을 위한<br>제반작업 진행 후에는<br>반환 불가 | VII-1. 참고                                                    |
| 재고관리<br>비용                        | 해당없음                       |                                                                                                                     |                                                                                                                                                                                                     |                                                                     |                                                              |
| 회계처리<br>비용                        | 해당없음                       |                                                                                                                     |                                                                                                                                                                                                     |                                                                     |                                                              |
| POS<br>사용료                        | 협력업체<br>(미지정)              | 업체 기준에 따름                                                                                                           |                                                                                                                                                                                                     |                                                                     |                                                              |
| 지연이자                              | 가맹본부                       | 연이율 20%                                                                                                             | 금전지급의무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br>지급기일 경과 시 미지급액에 대하여<br>지급기일의 다음날로부터 지급하는<br>날까지 지연이자 가산                                                                                                                      | 금전지급의무의<br>이행 지체에 대한<br>지연이자 성격                                     |                                                              |

##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  
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3)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기준: 2023년)                   | 내용 |
|---------------------------------|----|
|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 -  |
| 가맹점당 평균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 -  |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은 추정금액으로 2023년도에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한 구입요구품목의 매출액에서 해당 품목의 구매금액 합을 뺀 차액을 6개월 이상 운영한 가맹점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 경우 전년도에 구입하여 금년에 공급하는 부분, 금년에 구입하였으나 아직 공급하지 않은 부분, 자체생산품목에 대한 차액가맹금 미포함 등으로 인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감독 항목 | 내 용                       | 시기     |
|-------|---------------------------|--------|
| 재고관리  | 실재고 수량을 조사하여 장부상 재고와 비교   | 분기별 1회 |
| 회계처리  | 가맹점사업자의 매출누락에 대한 회계 조사 실시 | 1년 1회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위생, 재고관리 등을 포함한 점포 경영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가맹점사업자의 점포를 점검하고 기준에 위반하는 결과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 영업과 관련하여 영업장부, POS, ERP시스템, 회계장부(이하 '회계자료'라고 한다)를 성실히 작성·유지하여야 하며, 상품 구입과 판매에 관한 회계자료 등 당사의 통일적 사업경영 및 판매 전략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보관하고 당사의 청구가 있으면 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한 자료의 확인과 기록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의 직원이 점포에 출입하여 조사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 구분 | 금액 | 지급 기한 | 반환조건 | 반환될 수 없는 사유 | 비고 |
|----|----|-------|------|-------------|----|
| 총계 |    |       |      |             |    |

|        |         |                |                       |   |             |
|--------|---------|----------------|-----------------------|---|-------------|
| 갱신 가맹비 | 없음      |                |                       |   |             |
| 추가 교육비 | 협의하여 결정 | 교육 시작<br>7일 이전 | 교육 시작 3일 이전에<br>계약 해지 | - | 추가교육<br>필요시 |
| 점포 이전비 | 협의하여 결정 | 점포 이전<br>7일 이전 | 점포 이전에 합의하지<br>않을 경우  | - | 점포이전<br>합의시 |

당사는 계약종료 시점에 점포 위치에 대한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있어, 가맹점 운영에 반드시 필요하다 고 당사가 판단하여 협의한 결과 가맹점도 이에 동의하면 점포 이전비가 추가 될 수 있습니다.

##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 종료시 조치사항

###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귀하는 가맹사업을 양수한 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귀하가 새로운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으면 기존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계약을 해지할 경우, 당사가 귀하로부터 수령한 가맹금 중 이행 의무가 남아 있는 부분이 있을 경우 귀하는 계약 해지와 함께 당사의 귀책 정도에 따라 가맹금 중 미 이행 부분 중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사용을 허락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이를 가맹점사업자가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가맹점사업자는 변경된 영업표지를 사용하도록 협조하여야 합니다.

###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당사가 귀하로부터 수령한 가맹금 중 이행의무가 남아있는 부분이 있을 경우 귀하는 계약 해지와 함께 당사의 귀책 정도에 따라 가맹금 중 미 이행 부분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가맹점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 양도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양수가맹점사업자는 양수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양수가맹비 금 삼백삼십만원(₩3,300,000), 교육비 금 삼백삼십만원(₩3,300,000), 계약이행보증금 금 이백만원(₩2,000,000) 등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상호.간판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내지 제거하여야 하며, 가맹본부가 제공한 설비, 전산시스템 등 영업 관련 자산을 가맹본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일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다이닝인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하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다이닝인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당사는 다이닝인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2) 당사가 다이닝인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품·용역명                                                                 | 제한내용 및 조건                                                                                                   | 위반시 책임                                                                        |
|------------------------------------------------------------------------|-------------------------------------------------------------------------------------------------------------|-------------------------------------------------------------------------------|
| 대창덮밥, 갈릭쉬림프,<br>파스타, 새우볶음밥,<br>크림새우, 청포도 에이드<br>등으로 가맹점에 개별<br>공지하는 메뉴 | 브랜드의 통일성 및 서비스의 품질을<br>유지하기 위하여 왼쪽에 기재된 이외의<br>제품을 판매할 수 없으며 당사가 제시하는<br>상품 또는 서비스의 적절한 품질기준을<br>준수하여야 합니다. | 1회 위반: 구두 경고<br>2회 위반: 서면 시정요구<br>3회 이상 위반: 서면<br>시정요구 후 상품공급의<br>중단 또는 계약 해지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상기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이외에도 가맹사업의 개선, 고객니즈의 변화, 경쟁업체의 출현, 시장변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가맹사업 전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으로 기존 메뉴의 변경 또는 추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못하며 가맹본부가 지정한 상품·용역만을 판매해야 합니다.

## 2) 거래상대방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거래상대방<br>(고객) | 상품·용역 명                               | 제한내용 및 조건                            | 위반 시 책임                                                                    |
|---------------|---------------------------------------|--------------------------------------|----------------------------------------------------------------------------|
| 타 가맹점사업자      | 당사 또는 당사의 지정<br>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상품<br>및 제품 | 거래상대방별로<br>기재된<br>상품·용역은<br>판매할 수 없음 | 1회 위반: 구두 경고<br>2회 위반: 서면 시정요구<br>3회 이상 위반: 서면 시정요구 후<br>상품공급의 중단 또는 계약 해지 |
| 경쟁업체          |                                       |                                      |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시장상황이나 소비자의 동향 또는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장 적절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소비자 판매가를 정하여 권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권장가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사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고 당사와 사전협의하여야 합니다.

####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동일한 업종             |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      |
|--------------------|-------------|------|
|                    | 가맹본부        | 계열회사 |
| 퓨전요리를 전문으로 하는 가맹사업 | 다이닝인        | -    |

##### 2) 영업지역 설정기준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설정 기준                                                                      | 설정방법               |
|----------------------------------------------------------------------------|--------------------|
|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500m<br>단, 특수상권(백화점, 마트, 시장, 지하상가, 공항, 호텔 등)은 별도의<br>영업지역으로 인정 | 계약서 별지에 영업지역<br>표시 |

#####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 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 재조정 절차                                                                          | 동의를 얻는 방법                                                                                |
|-----------------------------------------------------------|---------------------------------------------------------------------------------|------------------------------------------------------------------------------------------|
|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br>동의를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br>(신규 점포 입점 가능) |
|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                                                                                 |                                                                                          |
|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                                                                                 |                                                                                          |
|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

#####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다이닝인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다이닝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 연도   |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         |               |        |
|------|-----------------------|---------|---------------|--------|
|      |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         |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        |
|      | 가맹점                   | 기타 오프라인 | 자사 온라인몰       | 기타 온라인 |
| 2023 | -                     | -       | -             | -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 연도   |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
|------|--------------|-------------|
| 2023 | -            | -           |

##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다이닝인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이며, 갱신 시에는 2년씩 계약기간이 연장됩니다.

###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다만 당사에게 정당한 사유(갱신거절 사유)가 있는 경우 재계약 또는 계약 연장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순 서                                                         | 기간(계약만료일: D-day) |
|-------------------------------------------------------------|------------------|
|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br>예→②, 아니오→⑦                      | D-180 ~ D-90     |
|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br>예→④, 아니오→③                  | D-180 ~ D-90     |
|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br>예→⑤, 아니오→A                | D-180 ~ D-90     |
|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br>예→B, 아니오→A | ①+15일 이내         |
|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br>예→C, 아니오→⑥                   |                  |
|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br>예→B, 아니오→D   |                  |
|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br>예→B, 아니오→⑧       | D-180 ~ D-90     |

|                                                        |          |
|--------------------------------------------------------|----------|
|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br>예→E, 아니오→A | D-60일 이전 |
|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 D-day    |
|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 D-day    |
|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 D-day    |
|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                               | -        |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 -        |

### 3) 계약 갱신 거절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갱신요구 거절 사유                                                                                | 관련 계약조문 |
|-------------------------------------------------------------------------------------------|---------|
| 당사 또는 협력업체에 지급하여야 할 채무의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                                                  | 6조 2항   |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         |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         |
|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         |
|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         |
|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에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 |         |

###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는 아래와 같은 계약 해지 사유 발생 시 2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2회 이상 서면 시정요구를 하며 이에 대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시정이 없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계약 해지 사유                                             | 관련 계약조문           |
|------------------------------------------------------|-------------------|
| 가맹점사업자가 점포의 규모, 대표자 등의 가맹점의 표시에 해당하는 사항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 3조<br>2항~3항       |
| 가맹점사업자가 당사가 허용한 영업표지의 사용범위 외에 서면 동의 없이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 4조 3항             |
| 가맹점사업자가 당사가 보유한 영업표지를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양도한 경우              | 4조 4항             |
| 가맹점사업자가 공급품 대금 및 기타 대금의 약정한 납입기일을 경과하는 경우            | 8조~9조,<br>16조~17조 |
| 가맹점사업자가 개점 이후 교육에 참석을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거부하는 경우        | 17조               |
| 가맹점사업자가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 18조               |

|                                                                         |              |
|-------------------------------------------------------------------------|--------------|
|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제3자 명의로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 19조          |
| 가맹점사업자가 관리감독 기준에 의한 시정요구를 3개월에 걸쳐 3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 21조 1항       |
| 가맹점사업자가 승인 받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거나 통일성 유지를 위한 요구 품목을 사용하지 않아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저해하는 경우 | 22조<br>1항~4항 |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사전협의 없이 가격을 임의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 22조 5항       |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에 대하여 가맹점 판매용도 이외로 사용할 경우                        | 23조<br>10항   |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승인받지 않고서 요구 품목을 자점매입하거나 품질검사에 2회 이상 응하지 않는 경우           | 24조          |
| 가맹점사업자 및 매장근무자가 복장 규정을 위반하거나 영업시간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 26조~27조      |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승인 없이 가맹점 설비를 임의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 28조          |
| 가맹점사업자가 회계자료 통지 등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 29조          |
| 가맹점사업자가 공동으로 시행되는 광고의 광고비 분담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 30조          |
| 가맹점사업자가 공동으로 시행되는 판촉활동에 정당한 이유 없이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                           | 31조<br>3~4항  |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승인 없이 판촉물 등을 제작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 및 이미지를 훼손하는 경우                | 31조 2항       |
| 가맹점사업자가 사전 승인 없이 양도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 37조 1항       |
| 기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내용 및 별도 약정한 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 25조 20호      |
|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3개월 이상 개점이 지연되거나 최초 개설 비용의 지급을 지키지 않는 경우                  | 33조 제1항 제2호  |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즉시계약 해지 사유                                                                                                                                                                                                        | 관련 계약조문  |
|-------------------------------------------------------------------------------------------------------------------------------------------------------------------------------------------------------------------|----------|
|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 33조 3~4항 |
|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 된 경우                                                                                                                                                                               |          |
|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br>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br>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br>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          |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          |

|                                                                                                                                                                                                                                     |  |
|-------------------------------------------------------------------------------------------------------------------------------------------------------------------------------------------------------------------------------------|--|
|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
|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  |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
|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  |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  |

####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관련법의 제정 및 개정 또는 양 당사자 사이의 서면 합의, 경영방침의 변경이 있을 시에는 귀하에게 사전 통보한 후에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 갱신 시 변경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 180일에서 90일 사이에 계약의 변경 조건을 통지하고 재계약 여부를 묻게 됩니다.

###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가맹점운영권 환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양도 가능 조건                  | 양도 절차                                                                                                               |
|---------------------------|---------------------------------------------------------------------------------------------------------------------|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 |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에 따른 교육이수를 하여야 하고 양수가맹비 금 삼백삼십만원(₩3,300,000), 교육비 금 삼백삼십만원(₩3,300,000), 계약이행보증

금 금 이백만원(W2,000,000) 등을 당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원할 경우 당사는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규가맹계약 일지라도 가맹점 모집비용, 개점행사비 등이 일반적인 신규가맹계약보다 적게 소요될 경우에는 비용 소요액에 상응하는 가맹금을 당사와 협의하여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

###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할 경우에는 당사에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운영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 감독

### 1) 경업금지의 범위

가맹점사업자는 계약기간 중 모든 지역 내에서 자신 및 제3자로 하여금 당사의 허락 없이 다이닝인과 동종업종(타사 가맹점, 독립점포 및 가맹본부 경영을 포함한다)을 경영하여서는 안 됩니다.

계약 종료 후 당사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다이닝인의 영업비밀이 침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가맹점사업자에게 금지되는 경업금지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경업금지 되는 업종            |  |
|-----------------------|--|
| 당사와 동일한 퓨전요리를 취급하는 업종 |  |

###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다이닝인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영업시간        | 영업일수 | 비고                                        |
|-------------|------|-------------------------------------------|
| 10:00~22:00 | 연중무휴 | 다이닝인의 이미지나 명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사와 협의하여 결정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권장 종업원 수 | 직접 근무 여부 | 대체 가능 인력      | 비고 |
|----------|----------|---------------|----|
| 자율       | 자율       | 당사의 교육을 이수한 자 |    |

####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리·감독 항목 | 감독 절차                                             | 빈도 및 시기 |
|----------|---------------------------------------------------|---------|
| 매장 청결    | 담당자 매장 방문 → 청결도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 수시      |
| 친절도      | 담당자 매장 암행방문 → 주문 → 친절도 확인 → 관리표 작성 → 완료           | 수시      |
| 품질 관리    | 담당자 매장 방문 → 품질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 수시      |

## 9. 광고 및 판촉 활동

####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다이닝인 영업표지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광고 성격                       | 부담비율     |                     | 분담 절차                                                                                 |
|-------------|-----------------------------|----------|---------------------|---------------------------------------------------------------------------------------|
|             |                             | 본사부담     | 가맹점부담               |                                                                                       |
| 광고<br>전체 행사 | 상품광고,<br>브랜드 광고             | 광고비의 30% | 광고비 70%<br>/가맹점사업자수 | 실시 1개월 전 광고 계획<br>공고 → 가맹점의 광고참여<br>여부 결정 → 가맹점부담액<br>제시(명세서) → 제시받은<br>날로부터 2주일 내 납입 |
|             | 상품광고,<br>브랜드 광고+<br>가맹점모집광고 | 광고비의 30% | 광고비 70%<br>/가맹점사업자수 |                                                                                       |
|             | 가맹점<br>모집광고                 | 전액 부담    | -                   | -                                                                                     |
| 판촉행사        | 공동 판촉활동                     | 기획비용     | 제작비용 및<br>할인비용      | 행사계획 공고 →<br>가맹점부담액 제시 →<br>가맹점의 행사 참여 결정 →<br>행사 시행 → 종료 후                           |
|             | 개별 판촉활동                     | -        | 관련 제작실비 전액          |                                                                                       |

|                       |      |                        |                        |                                                            |
|-----------------------|------|------------------------|------------------------|------------------------------------------------------------|
|                       |      |                        |                        | 최종분담금 확정→ 확정된 날로부터 2주일 내 납입                                |
| 할인카드<br>.멤버십<br>제휴서비스 | 제휴행사 | 서비스로 인한 월<br>할인금액의 50% | 서비스로 인한 월<br>할인금액의 50% | (가맹점) 월 할인금액 제시<br>→ (가맹본부) 자료제출일로<br>부터 10일 이내 부담액 송<br>금 |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를 하려는 경우 가맹사업법에 따라 사전에 약정을 체결하거나 가맹점사업자의 사전동의(광고는 50% 이상, 판촉행사는 70% 이상)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판촉행사의 경우 70%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을 때 동의한 가맹점사업자만 참여하는 분리 판촉행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촉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촉활동 등을 위한 팸플렛, 카달로그, 쿠폰 등의 홍보물에 대하여 브랜드의 통일성 및 이미지 유지를 위하여 가맹본부와 사전 협의하여야 합니다.

##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 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 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귀하는 그 직원에 의한 영업비밀의 의무위반에 대하여도 관리감독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관리감독상의 의무는 본 계약의 성립시점부터 종료한 후 3년이 경과되는 날까지 지속됩니다.

##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당사가 귀하에게 제공하는 가맹계약서의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위약벌 사유 등                                           | 관련 계약조문 |
|----------------------------------------------------|---------|
| 귀하는 계약 기간 내 또는 계약 종료 이후 제18조(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또는 계 | 35조     |

|                                                                                                                                                                                                                                                                                                                                                                                                                                                                                                                                                                                                                                                                                                    |           |
|----------------------------------------------------------------------------------------------------------------------------------------------------------------------------------------------------------------------------------------------------------------------------------------------------------------------------------------------------------------------------------------------------------------------------------------------------------------------------------------------------------------------------------------------------------------------------------------------------------------------------------------------------------------------------------------------------|-----------|
| <p>약 기간 내 제19조(경업금지 의무) 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 귀하는 당사에게 위약별로 금 오천만원(₩50,000,000)을 지급하여야 한다.</p> <p>귀하가 제23조 제1항의 공급품에 대하여 제2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자점매입을 한 경우 귀하는 당사에게 위약별로 금 일천만원(₩10,000,000)을 지급하여야 한다.</p> <p>귀하가 가맹점의 운영을 일방적으로 중단·폐업 처리하거나 당사가 사용을 허락한 영업표지를 사용하지 않는 점포로 운영 또는 양도한 경우 귀하는 당사에게 위약별로 금 일천만원(₩10,000,000)을 지급하여야 한다.</p> <p>귀하가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후 당사가 계약 기간 내에 사용을 허락한 영업표지 등을 상호, 간판, 기타 표시물 등에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귀하는 계약 종료 익일부터 위약별로 1일 금 삼십만원(₩300,000)씩 당사에게 지불하여야 한다.</p> <p>귀하가 제35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한 위약벌 이외에 당사 또는 귀하에게 추가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입은 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p> <p>당사 또는 그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귀하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당사 측에 그 배상 책임이 있다.</p> | 1~6항      |
| <p>본 계약에 규정된 금전지급의무 또는 본 계약의 위반으로 부담하는 금전지급의무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지급기일을 경과하면 미지급액에 대하여 지급기일의 다음날로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이율(20%)의 지연이자를 가산한다.</p>                                                                                                                                                                                                                                                                                                                                                                                                                                                                                                                                                                 | 39조<br>1항 |

##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 구분                | 내용                                                      | 소요기간          | 소요비용                                          |
|-------------------|---------------------------------------------------------|---------------|-----------------------------------------------|
| 합계                |                                                         | 47일 내외        | IV.<br>가맹점사업자의<br>부담,<br>1. 영업개시<br>이전의 부담 참조 |
| 가맹희망자 문의          | - 전화문의 접수<br>-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 D-47          |                                               |
| 사업 설명·상담          | -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제공<br>-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br>- 가맹희망자 상담 | D-46 ~ 45     |                                               |
| 점포개발 및<br>상권분석 실시 | - 입지선정<br>-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 필요시 실시        |                                               |
| 최종 협의             | - 개설 승인                                                 | D-34 ~ 31     |                                               |
| 가맹계약 체결           | - 계약 체결                                                 | D-30          |                                               |
| 가맹금 지급            | - 가맹금을 가맹본부 지정계좌로 입금<br>(가맹금 지급 보증보험 수령)                | D-30          |                                               |
| 실내외 공사착수          |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 D-30~29       |                                               |
| 인테리어 공사           | - 공사 실시                                                 | D-29 ~ 4(25일) |                                               |
| 교육 실시             | - 점포운영교육 실시(공사기간 중)                                     | D-7 ~ 4(3일)   |                                               |
| 점포 개설             |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 D-day         |                                               |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 점포환경개선사유                                                      | 가맹본부 부담<br>비용항목                                                | 가맹본부<br>부담비용비율                     | 지급절차                                                                                                           | 비용부담 제외사유                                                                                                     |
|---------------------------------------------------------------|----------------------------------------------------------------|------------------------------------|----------------------------------------------------------------------------------------------------------------|---------------------------------------------------------------------------------------------------------------|
|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간판교체비용<br>-인테리어 공사비용으로서 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20% | 가맹점사업자의 비용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br>(단, 별도 합의시 1년 범위 내에서 3차에 걸쳐 분할지급) |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해지, 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 환수 |
|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40%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                                                                                                               |

###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대상 및 내용                                           | 절 차                                                                                                                                       | 비용부담                                            |
|-------------------|---------------------------------------------------|-------------------------------------------------------------------------------------------------------------------------------------------|-------------------------------------------------|
| 가맹본부<br>요청시       | 계약이행, 표준화, 시장조사, 판촉, 가맹점의 경영상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분석 및 지도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가맹본부 담당자가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 가맹본부<br>부담                                      |
| 가맹점<br>사업자<br>요청시 | 특별경영지도                                            |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가맹본부 담당자가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 가맹점<br>부담<br>(가맹금에 포함된 통상의 경영지도 비용을 초과한 부분에 한함) |

### 4. 신용 제공 등 내역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지원정책 | 주요 내용 | 지원조건 | 지원기간 | 지원내용 | 비고 |
|------|-------|------|------|------|----|
|      |       |      |      |      |    |

##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다이닝인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주요내용                              | 교육방식          | 기한                  | 비고    |
|-------|-----------------------------------|---------------|---------------------|-------|
| 신규 교육 | 회사 소개<br>음식 가공<br>POS 사용, 입금 방법 등 | 실습교육<br>집단 강의 | 가맹계약 체결 후<br>1개월 이내 | 필수 교육 |
| 수시 교육 | 경영상의 필요                           | 개별 또는 집단강의    | 개별 협의               | 필수 교육 |
| 특별 교육 | 가맹점사업자의 요청 내용                     | 개별교육          |                     | 선택 교육 |
| 재교육   | 가맹점관리 및 운영                        | 개별교육          |                     | 필수 교육 |

###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다이닝인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최소시간 | 비용(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 비고                 |
|-------|------|------------------------------|--------------------|
| 신규 교육 | 총 3일 | 3,300                        | 최초 계약시 이수          |
| 수시 교육 | 개별협의 | 1인 1일 기준 110, 특수사항은 실비 청구    | 필요시 실시             |
| 특별 교육 |      | 1인 1일 기준 110,<br>특수사항은 실비 청구 | 요청시 실시             |
| 재교육   |      | 1인 1일 기준 110, 특수사항은 실비 청구    | 일정자격 미달 가맹점에<br>실시 |

###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 당사자가 원하여 당사자 외 직원도 같이 교육을 받게 되면 인원 추가에 따라 비용도 추가됩니다.

### 4. 교육·훈련 불참 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

기한 내 신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개점이 지연 될 수 있으며 개점 이후 전체적으로 실시되는 교육에 교육 대상자가 불참할 경우 가맹점운영권 제한 사유 및 계약 갱신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 연번 | 지역 | 명칭 | 소재지 |
|----|----|----|-----|
|    |    |    |     |

당사는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년, 개월)

|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 비고 |
|---------------------|----|
| -                   |    |

###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 비고 |
|----------------------|----|
| -                    |    |

---

---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별첨1>

재무현황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별첨2>

**<가맹점사업자의 인근 가맹점사업자 현황>**

※ 귀하가 장래 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지역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당사의 가맹점사업자의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    | 가맹점명칭 | 소재지 | 전화번호 |
|----|-------|-----|------|
| 1  |       |     |      |
| 2  |       |     |      |
| 3  |       |     |      |
| 4  |       |     |      |
| 5  |       |     |      |
| 6  |       |     |      |
| 7  |       |     |      |
| 8  |       |     |      |
| 9  |       |     |      |
| 10 |       |     |      |

(가맹희망자 보관용)정보공개서 제공확인서

1. 본인은 가맹본부 신한비즈넷으로부터 다이닝인 정보공개서(인근 가맹점사업자 현황 및 기타 별첨 문서 포함)를           년       월       일,  
                시                 구                 로  
에서 제공 받았으며 이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검토하였습니다.
2. 또한 귀사의 정보공개서를 수령하는 경우에 귀사의 영업비밀 또는 사업에 관한 중요정보를 무단으로 유출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을 것임과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민 /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합니다.

|             |  |               |           |
|-------------|--|---------------|-----------|
| 가맹희망자<br>성명 |  | 서명 또는<br>기명날인 | 년 월 일 (인) |
| 전화번호        |  |               |           |
| 주소          |  |               |           |

년 월 일 가맹본부 대표(담당자) 성명: 인

-----간인 후 절취-----

(가맹본부 보관용)정보공개서 제공확인서

1. 본인은 가맹본부 신한비즈넷으로부터 다이닝인 정보공개서(인근 가맹점사업자 현황 및 기타 별첨 문서 포함)를           년       월       일,  
                시                 구                 로  
에서 제공 받았으며 이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검토하였습니다.
2. 또한 귀사의 정보공개서를 수령하는 경우에 귀사의 영업비밀 또는 사업에 관한 중요정보를 무단으로 유출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을 것임과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민 /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합니다.

|             |               |           |
|-------------|---------------|-----------|
| 가맹희망자<br>성명 | 서명 또는<br>기명날인 | 년 월 일 (인) |
| 전화번호        |               |           |
| 주소          |               |           |

년 월 일 가맹본부 대표(담당자) 성명: 인